구분 면제･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･감면의 방법 ⑤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법§20) -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 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-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 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면제 (조특법§21) -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등 -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- 100% 면제 ⑦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(조특법§62) -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 도시 또는 세종시로 이전 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- 성장관리권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-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, 5년 거치 5년간 균등액 이상을 환입 -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2년은 100%, 그 다음 2년은 50% 감면 \* 감면대상소득 : 과세표준 ×이전 본사근무인원 비율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(조특법§63) -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(중소기업 2년)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(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)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이전 후 공장소득 \* 본사가 함께 있는 경우 같이 이전 -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6년 (4년)은 100%, 그 다음 3년 (2년)은 50% 감면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(조특법§63의2) - 부동산업, 건설업, 소비성 서비스업,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소득 -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6년 (4년)은 100%, 그 다음 3년 (2년)은 50% 감면 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(조특법§64) -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- 나주일반, 혁신･김제지평선･장흥바이오 식품･북평국가, 일반･강진･정읍 첨단 과학･동함평･세풍일반(1단계)･담양 일반･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 하는 중소 기업 -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와 그후 4년간 → 법인세 50% 감면